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전자담배 판매업소

☒ 신청기한 : 신규신청 연중

[기존 영업자] 2026. 4. 23. (목) 18:00까지
(공포일 2025. 12. 23. 이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접수처 :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방문접수)

☒ 필요서류 : [공통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기존 영업자 추가 서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 법 공포일 이후 신규 진입자는 거리 제한 유예 대상이 아님
- ※ 소매인 지정 없이 시행일 이후 판매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
- ※ 2025. 12. 23. 기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 중 거리제한 요건이 미충족된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전자담배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리제한 요건을 2년간 유예 (2026. 4. 24. ~ 2028. 4. 23.)하며 2년 도과시 소매인 지정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
- ※ 담배사업법상 결격사유 및 부적당 장소 등 지정 불가 : 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거리 제한 요건'에 한함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061-659-3625)